

2026 대한민국 국제 의약품 전문전시회(CPHI KOREA) 참가기업 모집공고

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도내 바이오 원료 및 의약품, 의료기기 관련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도비 100% 지원 『2026 대한민국 의약품 전문전시회(CPHI KOREA 2026)』 참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. 대한민국 국제 제약·바이오 산업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. 5. 22.

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□ 전시회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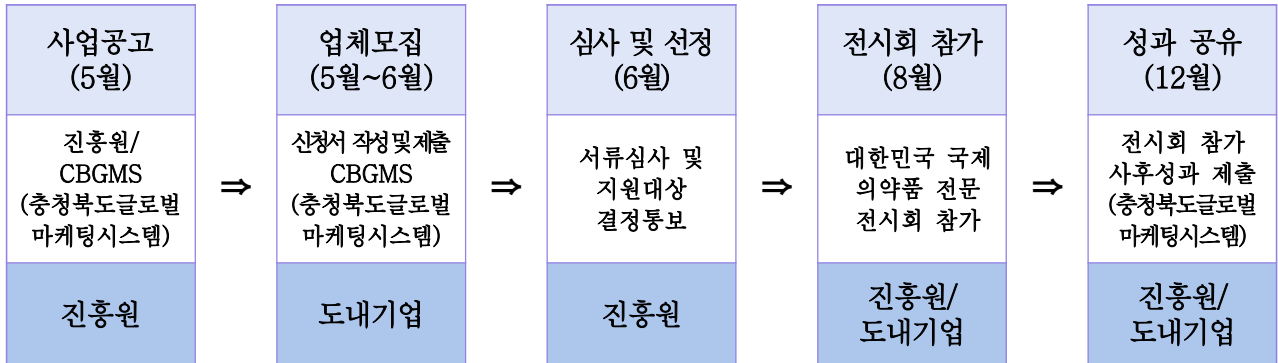
- 전시회명 : CPHI KOREA 2026(2026 대한민국 국제 의약품 전문전시회)
- 기간/장소 : 2026. 8. 25.(화) ~ 27.(목) / 서울 코엑스
- 지원규모 : **도내 바이오 원료 및 의약품, 의료기기 관련 3업체**
- 전시규모 : (전시) 70개 국가 420개 기업 (방문) 12,000여명
- 지원내용 : 부스비(80%), 장치비(80%), 행정지원 등
 - ※ 기업 자부담 : 부스비(20%), 장치비(20%), 체제비, 추가장치비 등
- 총복관 : 3부스 27㎡(업체당 약 9㎡)

□ 신청자격

- 공고일 기준,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충북지역에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)을 보유한 바이오 원료 및 의약품, 의료기기 관련 기업
(※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(사본) 또는 공장등록증에 따름)

- 진흥원 지원사업 「2026년 태국 의약품 전시회」 참가기업은 신청(중복) 불가

2 추진절차



3 평가 및 선정

□ 선정방법 : 1차 서류적격 확인 → 2차 평가위원회 심사

-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종합점수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참가기업 선정

□ 선정기준

기업 경쟁력 (7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가제품/바이어발굴/목표시장 적합성 - 참가제품 마케팅 활동계획 적합성 - 최근 2년간 평균 수출액 - 해외규격인증 보유 - 외국어카탈로그/홈페이지/동영상 보유 - 특허권/상표권/디자인권 보유 - 지원을 통한 목표 및 기대효과 	정책 우대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- 품질경영우수기업/노인일자리창출인증기업/고용우수기업/사회적경제기업/여성기업/장애인기업/메인비즈/이노비즈/벤처기업/창업기업/가족친화인증기업/일자리옴므기업/수출잠재기업 - 최근 2년간 충북무역의날 수상 경력 -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참여 이력
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	--

※ 향후 평가지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4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6. 5. 22.(금) ~ 6. 12.(금)

□ 신청방법

- 충청북도글로벌마케팅시스템([CBGMS/cbgms.chungbuk.go.kr](http://cbgms.chungbuk.go.kr))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(신청서류 제출)만 가능
- 진흥원 홈페이지(www.cba.ne.kr) 공지사항 사업신청 안내

○ 문의처 :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 심우석 팀장(043-230-9741)

○ 제출서류

필수서류	① 지원신청서(참가신청서,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포함) 1부 ※붙임서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③ 신청기업의 참가제품 카탈로그 및 제품설명서 사본 ④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1부
보유시	① 최근 2년간 수출실적 증명서 사본 ② 해외규격인증/해외지식재산권 사본(※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) (해외인증서/특허/상표권/디자인권) ③ 외국어 카탈로그, 홈페이지, 동영상 입증할 자료 사본 ④ 품질경영/노인일자리창출/고용우수/사회적경제/여성기업/장애인기업 ⑤ 메인비즈/이노비즈/벤처기업/창업기업/가족친화/일자리뜨음/수출잠재

5 유의사항

- 평가표 근거 증빙자료 CBGMS 미등록 시 평가 배점에서 제외
- 선정 규모 대비 접수 규모가 미달일 경우 재공고 시행
-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부스 내 그래픽장치(현수막, 그래픽 등)를 설치하여야 함
- 선정 알림 이후 포기 시 향후 동사업 지원 시 패널티 부여(사업제한)
- 참가기업은 향후 3년간 수출실적 조사에 협조해야 함